

의안번호	2202603
의 퇴 인	조은희의원
회 답 일	2024. 11. 4.
추계번호	24D2638

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)	정부는 취약계층 청년 ¹⁾ 의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취업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경로 설계, 직장체험·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,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7조(주거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, 임대료 지원,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8조 (상담·치료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상담·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고, 취약계층 청년의 정신건강이나 중독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	의무·재량 규정
5	안 제9조 (금융생활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상담서비스, 금융사고 예방교육 및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0조 (문화활동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문화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11조(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의 지정 등)	국무총리는 관련 기관·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(이하 “자립지원센터”)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, 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취약계층 청년”이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(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)을 말한다고 정의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)	—	미대상: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: 국무조정실에서 2021년 ‘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 한 연구’ 예산으로 3,636만원 소요
2	안 제6조(취업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 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 려운 경우
3	안 제7조(주거지원)		
4	안 제8조 (상담·치료지원)		
5	안 제9조 (금융생활지원)		
6	안 제10조 (문화활동지원)		
7	안 제11조(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의 지정 등)		

2. 상세 사유

-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지원, 주거지원, 상담·치료지원, 금융생활지원, 문화활동지원, 자립지원센터 지정(안 제6조~제11조)
 -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지원, 주거지원, 상담·치료지원, 금융생활지원, 문화활동지원, 자립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예산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, 지원방법, 주기 등을 알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 - 다만, 부처별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
 -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‘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’

사업(37억원)의 내역사업인 ‘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’ 21억원, ‘고립·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’ 13억원을 편성

- 고용노동부의 ‘청년추가고용장려금’ 사업 170억원(2024년)
- 금융위원회의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3,682억원(2024년)
- 문화체육관광부의 ‘문화예술향유지원’의 내역사업인 ‘통합문화이용권’ 2,397억원(2024년)
- 여성가족부의 ‘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’의 내역사업인 ‘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’ 7억 6,200만원(2024년),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 247억원(2024년), ‘학교 밖 청소년 자립·취업지원서비스’ 19억원(2024년) 등이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